



제422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연대보증 구상채무의 감경·면제〉

■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982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민병덕의원 등 19인

나. 제 안 일 : 2024. 10. 29.

다. 회 부 일 : 2024. 10.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결정 또는 파산선고로 중소기업의 주채무가 감경·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회생결정 또는 파산선고 이외에는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를 별도로 감면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再起)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술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같이 신용보증기금도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이사 등의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감경·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 법적 분쟁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30조의3).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연대보증채무자의 채기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의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감경·면제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현행	개정안
제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생략) ＜신설＞ ＜신설＞	제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기금은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자의 채기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업무방책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민법」 제485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이들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과거에는 이러한 신용보증 과정에서 기금의 채무건정성과 기업인의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 등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비해, 경영에 책임이 있는 실제경영자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주채무자(중소기업)와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의무를 지게하는 연대보증제도를 운영하였음.

○ 연대보증제도는 기금의 보증서 발급을 위한 심사를 용이하게 하고 부실 발생 시 채권회수 수단으로써 역할을 해왔으나, 주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관련 채무가 모두 전가되어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신규창업 및 성실 실패 사업자의 재도전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¹⁾²⁾되어 왔음.

□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기관의 대출·보증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왔으며, 2018년 4월부터는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을 신규·증액분에 대하여 전면폐지³⁾하였음.

1) 노용환, 「공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현황과 정책과제」, 중소기업금융연구, 2018.

2) 장현수, 「연대보증제도 폐지가 신용보증에 미치는 효과 및 대책」, 중소기업금융연구, 2018.

3) 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제도 폐지와 관련된 연혁은 [참고자료 1] 참조

- 다만, 과거 연대보증제도가 운영될 당시 발생한 연대보증채무는 여전히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음. 2024년말 기준으로 연대보증인이 있는 구상권 잔액은 4조 1,039억원, 연대보증인 수는 2만 926명에 이르고 있음.

[표 1] 연대보증인이 있는 구상권 현황(2024년말 기준)

기업수(개)	구상권 잔액(억원)	연대보증인 수(명)
16,399	41,039	20,926

(자료: 금융위원회)

- 현행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⁴⁾은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에는, 연대보증한 경영자 개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율로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이러한 규정은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또는 파산선고로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경우에도 이를 연대보증한 경영자에게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경영자 개인의 재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임.

4)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 다만, 이와 같이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연대보증한 경영자의 연대보증채무는 감경 또는 면제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채기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기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이 도산·파산할 경우 연대보증인의 채기가 어렵고, 도산·파산한 기업의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 대부분이 채무상환 능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변제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표 2] 신용보증기금 부실채권 채무감면 현황(2024년말 기준)

(단위: 명,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원	감면액	인원	감면액	인원	감면액	인원	감면액
주채무자	1,521	1,447	1,317	1,248	1,252	1,330	1,691	859
연대보증인	810	3,899	539	3,139	399	2,157	443	1,974
기타	59	191	49	368	55	176	56	206
합 계	2,331	5,537	1,856	4,755	1,651	3,663	2,134	3,039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다른 보증기관의 근거 법률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관간 제도의 통일성 차원에서 개정안의 내용을 수용한다는 입장임.

○ 참고로, 제21대국회에서는 개정안과 유사하게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이 기업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법」⁵⁾, 「기술보증기금법」⁶⁾이 각각 개정되었음.

□ 한편, 개정안 제30조의3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민법」 제485조를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

「민법」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7)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 「민법」 제485조는 주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예: 연대보증채무자)가 구상권 등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채권자에게 담보⁸⁾보존의 의무를 부과하고,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하게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상환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5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① 재단은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민법」 제485조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6)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① (생략)

② 기금은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민법」 제485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7)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8) 연대보증은 인적담보에 해당함.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대위할 자의 연대보증채무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것임.

- 예컨대, 연대보증채무자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확보한 담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연대보중에 동의⁹⁾하였으나, 채권자가 이러한 담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가치가 상실되거나 감소하게 할 경우 이러한 기대이익이 훼손되게 되므로, 「민법」 제485조는 이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이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하더라도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이를 사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판례는 이미 “수인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들 사이에 연대관계의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채권자가 연대보증인 중 1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더라도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¹⁰⁾고 하여 연대보증채무 면제의 절대효를 부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지 못한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민법」 제485조를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9) 예를 들어, 연대보증채무자는 주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본인이 대위하여 변제하더라도, 해당 담보를 통해 대위변제한 금액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연대보중에 동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10) 대법원 1992.9.25. 선고 91다37553 판결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분쟁 소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법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임.

- 참고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11), 「기술보증기금법」 12)에서는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다만, 채권자인 기금의 결정에 따라 연대보증채무의 감면이 이루
어지는 상황에서 다른 연대보증채무자에게 면책을 주장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다른 연대보증채무자의 재산권 및 평등권에 대한 제한
이 되므로,

- 중소기업 경영자 등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이라는 개정안
의 취지, 유사 입법례와 개인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
가 있을 것임.

1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5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① 재단은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민법」 제485조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12)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① (생략)

② 기금은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민법」 제485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참고자료 1】

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제도 운용 연혁

구 분	제도 개선 주요 내용
2012.5.	- 제3자 연대보증 폐지(단, 실제경영자에 한해 연대보증인 운용) * [예외] 동일관계기업, 부도기업 기존 채무자(회생지원보증 취급 시)
2013.6.	- 개인기업 연대보증 전면 폐지 * [예외] 동업기업 공동대표(실제경영자에 한함), 부도기업 기존 채무자
2014.1.	- 우수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제도 도입 * [운용] 창업 1년 이내 우수 창업기업, 창업 3년 이내 전문가 창업기업
2016.1.	- 창업기업(창업 5년)*으로 연대보증 면제 확대 * [운용] 창업 5년 이내 법인기업, 기술력·미래성장성 보유 법인기업
2017.8.	- 창업기업 면제범위 확대(창업 5년 → 창업 7년) * [운용] 창업 7년 이내 법인기업, 기술력·미래성장성 보유 법인기업
2018.4.	- 법인기업 신규보증 연대보증인 전면 폐지* * [예외] 동업기업 공동대표(실제경영자에 한함), 부도기업 기존 채무자 등
2018.11.	- 법인기업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 * 면제대상을 기존보증을 이용하는 법인기업 실제경영자까지 확대

(자료: 신용보증기금)

문 의 처

02)6788-5106
